

# 소 장

- 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- 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 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  전화·휴대폰번호:
 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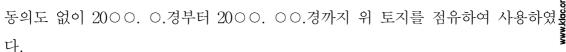
####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2.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나



www.kido.cor.krif.fo

3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·사용하여 임차료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, 그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기 전에 임차한 소외 ◉◉와의 임차료가 매년 금 1,000,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점유한 2년간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

#### 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| 관 할 법 원       | ※ 아래(1)참조  | 소멸시효 | 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 |
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        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|      |               |
| 비 용          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<br>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|      |               |
| 불복절차<br>및 기 간 |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<br>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 기 타 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      |

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